옥 천 군

선람	기관의 장

군 보

http://www.oc.go.kr

제1202호 2021. 2. 19.(금)

【규 칙】

○ 옥천군 규칙 제1425호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옥천군 규칙 제1425호 옥천푸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2

【고 시】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고시 제2021-1호 2021년도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 고시 ..22

【공 고】

○ 옥천군 공고 제2021-212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3

【기 타】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8호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43

회람									

발행: 옥천군 편집: 기획감사실(☎730-3063)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19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규칙 제1425호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축산물”을 “농수산물”로 한다.

제3조 중 “농·축산물”을 “농수산물”로 한다.

제4조제1호 본문 중 “농산물 :”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을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본문 중 “가공품 :”을 “가공품:”으로,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수산물”로 하며, “50%이상 이며”를 “50퍼센트 이상이

며”로 한다.

3. 수산물: 무항생제, 유기수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수산물

5. 그 밖에 전문시험분석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에 적합한 농수산물

제5조제2항 중 “인증 또는 갱신”을 “인증”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수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무항생제, 유기축산”을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축산물”을 “농수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수산물”로 하고, “50%이상 이며”를 “50퍼센트 이상이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축산물”을 “농수산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증 품목 및 분류번호(제3조 관련)

구 분			분류번호	대 상 품 목
농산물 1	곡 류		01	쌀,찹쌀,현미,보리쌀,율무쌀,콩,팥,녹두,수수쌀,기장쌀,메밀,옥수수(팝콘용),옥수수쌀 등
	과 실 류		02	사과,배,감귤,복숭아,매실,단감,자두,살구,모과,포도,금감,석류,유자,참다래,양앵두(버찌),앵두,호두,은행,밤,감,대추,머루,블루베리,오미자 등
	채 소 류		03	마른고추,고추,오이,호박,단호박,가지,토마토,방울토마토,피망,참외,딸기,수박,조롱수박,멜론,풋옥수수,풋완두콩,풋콩,양파,마늘,깐마늘,마늘종,대파,쪽파,무,총각무,결구배추,양배추,당근,시금치,들깻잎,결구상추,부추,마,생강,우엉,연근,미나리,고구마순,쑥갓,양미나리,케일,붉은양배추,브로콜리,고들빼기,머위,꽃양배추,신립초,갓,콩나물,달래 등
	서 류		04	감자,고구마 등
	특용,약용작물류		05	참깨,들깨,피땅콩,알땅콩,수삼,인삼,오미자,한약재, 꿀 등
	버 섯 류		06	느타리,팽이,영지,복령,동충하초,노루궁뎅이,새송이,표고,목이 등
	감미료류		07	꿀,감차,스테비아 등
가공품 2	반찬류	김치류	08	배추,열무,깍두기,부추 등
		조림류		감자,두부,땅콩,연근,우엉,쇠고기,돼지고기장조림 등
		볶음류		감자채,마늘쫑,계란말이,느타리버섯볶음,구운계란 등
		무침류		된장고추,더덕,깻잎,무말랭이,무생채,파래무침 등
		나물류		머위,호박,도라지,시금치,고구마줄기,숙주,취나물 등
		국,찌개류		쇠고기무,청국장,아욱,우거지된장국,육개장,김치찌개,된장찌개 등
		전류		김치전,버섯야채전,호박전,파전,야채모둠전,피자 등
		절임류		양파식초,무,고추,깻잎절임 등
	장류		09	고추장,간장,된장,메주,춘장,청국장 등
	잼류		10	딸기,호박,자두 등 잼류
	떡,한과류		11	떡류,쌀케익,유밀과,유과,다식,정과,엿강정,과편,숙실과 등
	드레싱소스류		12	당근,야채소스류 등
	유지류		13	참기름,들기름,고추씨기름,유채유 등
	음료류	차류	14	인삼,둥굴레,대추 등
		진액, 효소류		매실,생강,오미자,복분자,오디 등
		전통음료		식혜,수정과,야채과즙,두유 등
	육수		15	야채,혼합육수류 등
	수산물류		16	소금,젓갈,기타 수산물류
	분말류		17	버섯,고추,밀,보리,울금,혼합곡분말,미숫가루,수산물혼합가루양념 등
	죽류		18	동지팥,야채,흑임자,스프류 등
	두부류		19	순두부,색두부,유부,묵,콩비지 등
	제과,제빵,스낵류		20	국수,당면,스파게티,라면,만두,찐빵,누룽지,튀밥,건빵,수제비,초콜릿,쌀과자,전병 등
축산물 3	육류		21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뼈 등
	알류·젖류		22	계란,우유 등
수산물 4	내수면어업 수산물		23	다슬기, 빙어 등
식용곤충 5	식용곤충류		24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쌍별귀뚜라미, 갈색거저리유충

※ 품목군별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은 유사작목이 속한 분류군에 따라 구분함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옥천푸드 인증신청서(□신규 □변경 □갱신)(제5조제1항 관련)

신청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법인번호)	
	주 소		휴대폰번호	

생산계획

농수산물	연번	품 목	생산지 지번	재배면적(㎡) (사육마리수)	연간생산량(kg)	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 및 번호
	1					
	2					
	3					
	4					

월별 '파종(정식 포함)', '수확', '출하' 기재 ※ 생산계획 : 별지 작성 가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가공품

가공품명	원재료명 (생산지)	부재료명 (생산지)	원·부재료 옥천푸드 인증번호	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료채취 확인 및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받은 품목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서약자 (서명 또는 인)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옥천푸드 인증 관련 신청 및 심사, 관리 용도로 사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인증 신청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농 산 물	가 공 품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필수) 2.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 원·부재료 옥천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뒷면)

품질관리 서약서

1. 옥천푸드의 안전한 품질 유지를 위하여 인증 기준을 준수하며 인증교육, 생산자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농장체험, 현장체험, 작업장 소개 등 소비자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2. 옥천푸드 인증을 받은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 옥천군 내 생산이 어려운 재료의 수급은 옥천군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부재료로 사용하겠습니다.

3. 옥천푸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인증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즉시 유통 중인 인증 품목을 전량 회수하고 인증서를 반납하겠습니다.

본인은「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인증 신청함에 있어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준수사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법적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옥천푸드 인증서

인증번호		유효기간	
성 명 (단체 및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 및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집)		휴대전화	
생산지(지번)			
인증품목		재배면적(규모)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천푸드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인)

(뒷면)

인증번호: 인증기간:

생 산 자	생산지(지번)	지목	재배면적(㎡)
	인증품목		
	합 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인증”이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축산물과 가공품의 품질이 제4조의 제시된 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 농수산물---------- ---------- ----------.
제3조(인증 대상) 인증 대상은 농・축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인증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증 대상) -------- 농수산물---------- ---------- --------.
제4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에서 정하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다만,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신 설>	제4조(인증 기준) ---------- ----------. 1. 농산물: ---------- ---------- ---------- ---------- ----. ---------- ----------. 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 3. 수산물: 무항생제, 유기수산

	물, HACCP 인증을 받은 수산물
3. 가공품 : 원·부재료를 옥천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 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옥천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4. 가공품: ---------- ---------- 농수산물 ---------- ---------- ---------- ---------- 친환경농수산물---------- ----------50퍼센트 이상이며---------- ---------- ---------- ---------- ----------.
<신 설>	5. 그 밖에 전문시험분석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수산물
제5조(인증 신청) ① (생 략)	제5조(인증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 또는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 전 옥천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인증---------- ---------- ---------- --------.
제6조(인증 심사) ① (생 략)	제6조(인증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장심사는 농산물(필수), 토양·용수(필요 시)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농수산물----------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2. ---------- ---------- ---------- ---------- 친환경농수산물 -------
3.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농수산물
4. 원·부재료를 옥천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 이상 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4. ---------- ----- 농수산물 ---------- ---------- ---------- ---------- 친환경농수산물---------- 50퍼센트 이상이며----------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인증 취소) ① 군수는 인증받은 농·축산물 및 가공품이	제9조(인증 취소) ① ---------- --- 농수산물 ----------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19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규칙 제1426호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본문 중 “60%이상”을 “60퍼센트 이상”으로, “10%에서 최소 4%”를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2”를 “2분의 1”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개의하고”를 “시작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4점) - 국내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조항의 금융기관의 경우 순자본비율)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6점) - 자기자본이익율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8) (19)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지방세입금처리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의2 관련)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 ·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 ·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동일한 경우 만점처리 또는 동일 순위 처리

○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항목

가) 국외평가기관 (4점)

나) 국내평가기관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의 기준(공시자료 등)과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조항의 금융기관의 경우 순자본비율) (6점)

(2) 고정이하여신비율 (6점)

(3) 자기자본이익율 (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2점)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4%인 경우 4.4%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1%인 경우 1.2%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옥천군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예치금액별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옥천군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 흐름(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금융기관 중앙 종합전산센터의 전산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서, 보안평가 결과서 등과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지방세입금 수납개선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지방세입금처리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3점)

○ 지방세입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지방세입금처리센터 운영 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 금융기관의 지역사회기여에 대해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옥천군과의 협력사업(특정사업·프로젝트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고지정) ①·② (생 략)	제4조(금고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③ ----------4년----------. ---.
제5조의2(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① (생 략)	제5조의2(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② ----------60퍼센트 이상--------- ---------- -------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 ----------. ------- ---------- ---------- ---------- ---------- ---------- 2분의 1---------- --.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② ---------- 1명---

포함한 9명 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회 의원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를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 1 이상----------.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평가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생 략)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시작하고----------.
③ 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③ ----------. ----- 긴급한 ----------

지 아니하다.	--------.
제15조(금고운용 보고) ① (생략)	제15조(금고운용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그 밖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고시 제2021 - 1호

2021년도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 고시

옥천군수도급수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신규급수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옥 천 군 수

(단위: 원)

구경별 (mm)	거 리 (m)	본관연결	계량기 및 보호통설치	직관부설	토 공	계량기 보호통	계량기	소 계	공과금 (수수료)	합 계	비 고
15	1	155,020	156,160	2,450	18,820	118,600	93,800	544,750	87,000	631,750	
20	1	172,860	190,110	3,940	18,820	155,900	111,900	653,530	129,000	782,530	
25	1	213,510	196,920	5,640	18,820	178,600	136,800	750,290	213,000	963,290	
32	1	267,610	203,480	9,060	18,820	247,700	166,700	913,370	321,000	1,234,370	
40	1	365,800	267,780	12,730	18,820	368,700	241,300	1,275,130	426,000	1,701,130	
50	1	482,610	293,920	22,950	18,820	416,600	310,100	1,545,000	846,000	2,391,000	
*참 고		0. 포장구간은 아래금액을 토공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콘크리트구간 : 63,040원/m - 아스콘구간 : 62,630원/m - 보.차도구간 : 9,270원/m 0. 계량기 및 보호통은 구입단가로 하며 구입단가 변경 시 변경 적용한다. 0.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기간은 3월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한다.									

옥천군 공고 제2021-212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읍 금구리, 장야리의 다세대 신규아파트 조성 및 옥천읍, 동이면의 신규 거주촌 형성에 따라 주민의 편익 제고 및 일선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리 및 반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옥천읍 행정리 2개소(가화5리, 장야6리) 신설

※ 가화5리(계룡리슈빌A), 장야6리(더퍼스트이안A)

○ 옥천군 행정리 당초 224개 → 226개(+2)

○ 옥천군 반 당초 995개 → 1,016개(+21)

※ 가화5리(제1반~제9반), 장야6리(제1반~제10반),
가화1리(제14반), 남곡리(제5반)

4. 의견제출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lhj84132@korea.kr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옥천군, 동이면 반 현황을 별지와 같이 하고, 행정리와 반의 명칭과 구분 중 옥천읍란, 동이면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옥천읍란과 옥천읍 소계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옥 천 군 반 현 황(제4조관련)

구분 / 읍면	법정리	행정리	반 수	비 고
계	125	226	1,016	
옥 천 읍	21	64	400	
동 이 면	10	22	74	
안 남 면	7	12	45	
안 내 면	13	18	63	
청 성 면	17	28	107	
청 산 면	18	22	110	
이 원 면	15	28	105	
군 서 면	10	13	53	
군 북 면	14	19	59	

행정리와 반의 명칭과 구분(제4조관련)

읍면	행정리 (법정리)	반 명	관 할 구 역(번 지)
옥천읍	죽향1리 (죽향리)	제1반	18, 27, 28, 30, 40, 43, 44, 46, 49, 83, 92
		제2반	79, 82, 90, 99, 149, 150, 168 ~ 170, 172
		제3반	63,65~67,117,158,161,163,228,230~236,238,238-9,315
		제4반	47, 55, 58, 60, 70, 73, 74, 79~82, 169, 171, 186
		제5반	32(제룡빌라)
	죽향2리 (죽향리)	제1반	죽향153(주은옥향아파트101동101-102호통로1-15층)
		제2반	153(주은옥향아파트101동103-104호통로1-15층)
		제3반	153(주은옥향아파트102동101-102호통로1-10층)
		제4반	153(주은옥향아파트102동103-104호통로1-14층)
		제5반	153-2(주은옥향아파트102동105-106호통로1-14층)
		제6반	153-2(주은옥향아파트102동107-108호통로1-14층)
		제7반	153-2(주은옥향아파트103동101-408호복도1-4층)
		제8반	153-2(주은옥향아파트103동501-808호복도5-8층)
		제9반	153-2(주은옥향아파트103동902-1208호복도9-14층)
		제10반	153-2(주은옥향아파트103동109-416호복도1-4층)
		제11반	153-2(주은옥향아파트103동509-815호복도5-8층)
		제12반	153-2(주은옥향아파트103동909~1212호복도9-12층)
	죽향3리 (죽향리)	제1반	196-2(향수마을아파트 101동 101호~1502호 통로)
		제2반	196-2(향수마을아파트 101동 103호~1504호 통로)
		제3반	196-2(향수마을아파트 102동 101호~1502호 통로)
		제4반	196-2(향수마을아파트 102동 103호~1505호 통로)
		제5반	196-2(향수마을아파트 102동 106호~1507호 통로)
	문정1리 (문정리)	제1반	16~28, 32~41, 105, 107, 109, 138, 142
		제2반	1~4, 6~13, 15, 42~49
		제3반	50~56
		제4반	57~78, 80, 90, 125, 133~139, 144, 181, 242
		제5반	94,111(한울아파트)
	문정2리 (문정리)	제1반	91,227,232,257
		제2반	425,449~453,520
		제3반	464,465
		제4반	466,467,467-2
		제5반	445-1, 445-20, 445-2, 444-3, 442-1(명가타운, 아썸빌라 1차, 2차)
		제6반	398, 347, 350-1, 353-10, 353-8(우진초워빌,노블레스빌)
		제7반	353-1, 354, 359-4, 364-3, 358-2(햇살마을,스마일빌)
		제8반	350-11, 358-1, 361, 362-9, 364-4
	문정3리 (문정리)	제1반	403-1(하늘빛아파트 101동 1~2통로 101호~1502호)
		제2반	403-1(하늘빛아파트 101동 3~4통로 104호~1504호)
		제3반	403-1(하늘빛아파트 101동 5~6통로 105호~1506호)
		제4반	403-1(하늘빛아파트 102동 1~2통로 101호~1502호)

읍면	행정리 (법정리)	반 명	관 할 구 역(번 지)
옥천읍	문정3리 (문정리)	제5반	403-1(하늘빛아파트 102동 3~4통로 203호~1504호)
		제6반	403-1(하늘빛아파트 103동 1~2통로 101호~1502호)
		제7반	403-1(하늘빛아파트 103동 3~4통로 104호~1504호)
		제8반	403-1(하늘빛아파트 104동 1~2통로 101호~1502호)
		제9반	403-1(하늘빛아파트 104동 3~4통로 104호~1204호)
		제10반	403-1(하늘빛아파트 105동 1~2통로 101호~1502호)
		제11반	403-1(하늘빛아파트 105동 3~4통로 103호~1504호)
		제12반	403-1(하늘빛아파트 105동 5~6통로 105호~1506호)
		제13반	403-1(하늘빛아파트 105동 7~8통로 107호~1508호)
		제14반	403-1(하늘빛아파트 106동 1~2통로 101호~1502호)
		제15반	403-1(하늘빛아파트 106동 3~4통로 103호~1504호)
		제16반	403-1(하늘빛아파트 106동 5~6통로 105호~1506호)
		제17반	403-1(하늘빛아파트 106동 7~8통로 107호~1508호)
	문정4리 (문정리)	제1반	467-5(대성진달래아파트101호 통로1층-15층)
		제2반	467-5(대성진달래아파트102호-103호통로1층-15층)
		제3반	467-5(대성진달래아파트104호-105호통로1층-15층)
		제4반	467-5(대성진달래아파트106호-107호통로1층-15층)
		제5반	467-5(대성진달래아파트108호-109호통로1층-15층)
		제6반	467-5(대성진달래아파트110호-111호통로1층-13층)
	문정5리 (문정리)	제1반	374(문정주공아파트201동통로1-7층)
		제2반	374(문정주공아파트201동통로8-15층)
		제3반	374(문정주공아파트202동통로1-5층)
		제4반	374(문정주공아파트202동통로6-10층)
		제5반	374(문정주공아파트202동통로11-15층)
		제6반	374(문정주공아파트203동통로1-7층)
		제7반	374(문정주공아파트203동통로8-15층)
		제8반	374(문정주공아파트204동통로1-7층)
		제9반	374(문정주공아파트204동통로8-15층)
		제10반	374(문정주공아파트205동통로1-7층)
		제11반	374(문정주공아파트205동통로8-15층)
	문정6리 (문정리)	제1반	374(문정주공아파트301동통로1-7층)
		제2반	374(문정주공아파트301동통로8-15층)
		제3반	374(문정주공아파트302동통로1-7층)
		제4반	374(문정주공아파트302동통로8-15층)
		제5반	374(문정주공아파트303동통로1-7층)
		제6반	374(문정주공아파트303동통로8-15층)
		제7반	374(문정주공아파트304동통로1-7층)
		제8반	374(문정주공아파트304동통로8-15층)
		제9반	374(문정주공아파트305동통로1-7층)
		제10반	374(문정주공아파트305동통로8-15층)

읍면	행정리 (법정리)	반 명	관 할 구 역(번 지)
옥천읍	상계리 (상계리)	제1반	27-1, 31, 37, 46, 52～54, 56, 59, 74
		제2반	43, 44, 57, 60～62, 65, 74～76, 80, 83, 84, 86, 86-1
		제3반	83, 85, 93, 95, 101, 103, 104
	하계리 (하계리)	제1반	18, 23～34, 39, 40-1, 43, 45
		제2반	49, 50-1, 61, 65, 69, 70～75
		제3반	104, 107
	교동리 (교동리)	제1반	310, 302, 313, 314, 315, 318～320
		제2반	194, 196, 218, 297, 300
		제3반	4～19, 23, 26, 36, 39, 53, 74, 80
	동안리 (동안리)	제1반	15, 16, 23, 24, 26, 26-1
		제2반	38, 54, 62, 65, 68
		제3반	75-1～75-21
	화계리 (수북리)	제1반	115, 115-1, 115-2, 232～237, 247～249-1, 254～260-2
		제2반	51～59, 118～120, 246, 248, 253, 255
	동정리 (수북리)	제1반	22-3, 40～40-5, 15, 64, 112
		제2반	12, 22-2, 64, 109, 122
	오대리 (오대리)	제1반	516, 517, 639～654, 654-1, 674-10, 692-4, 698, 698-2
	매화리 (매화리)	제1반	산12, 21, 112
		제2반	90, 91, 91-1, 91-2, 94
		제3반	산30-1, 141, 143-9, 206, 206-1
		제4반	126～143
		제5반	146～162
	귀화리 (구일리)	제1반	57, 132, 200, 341-4, 425～427, 630, 633-3
		제2반	596-4, 623, 633-4, 634, 638～641-7, 672, 672-1, 780～790-1, 783, 784-2
		제3반	627, 634, 650, 781, 792, 784
	귀죽리 (구일리)	제1반	160, 180～190, 206～206-3, 289, 361-3
		제2반	180-2, 181, 182, 186～189-3, 193
	귀현리 (구일리)	제1반	240, 326, 330-3, 464-4, 486, 486-1
		제2반	330, 330-1, 330-2, 325, 326, 327, 315, 365, 375
		제3반	322, 246-2, 361～361-6, 365～365-7, 368
		제4반	434～436, 486-2, 450, 502

읍면	행정리 (법정리)	반 명	관 할 구 역(번 지)
옥천읍	서대1리 (서대리)	제1반	19, 50, 60, 67, 74, 190, 193
		제2반	173, 174, 180, 181, 235, 282, 283, 330
	서대2리 (서대리)	제1반	380, 386, 391, 393, 395-2, 399
		제2반	293, 299-2, 349
		제3반	349-2～20
	가풍리 (가풍리)	제1반	산43, 812～815, 862～864, 891～895, 902～956
		제2반	431, 665-19, 730, 816, 855～864-6
		제3반	354-4, 812, 863, 908～915-2, 925-1～928-3
		제4반	353-4, 431, 435, 816-1, 857～864-4, 908, 909, 926, 958-4
	원각리 (가풍리)	제1반	42-4, 47～48-2, 81, 81-1, 84～87, 160-1
		제2반	187, 190-1, 203, 204, 221, 224, 245-1～249, 257-1, 277-2, 254, 256, 279-3, 639-4
	상삼리 (삼청리)	제1반	산47-2, 596, 597, 600, 648～648-16
		제2반	592～595, 648, 648-1
	하삼리 (삼청리)	제1반	300～309, 384-1, 384-2, 388, 388-1, 379-2, 392, 390, 390-1, 312～313-3
		제2반	370-1～309-8, 312-2, 351, 392
		제3반	302, 308, 309, 312, 315, 379, 388
	중삼리 (삼청리)	제1반	400～400-16, 404～405-5, 413, 413-1
		제2반	308, 400-1, 400-14, 405-8, 410, 412, 413, 456
	소정리 (삼청리)	제1반	839-1, 846-1, 879-1, 906-1, 943-8, 952-6
		제2반	817-1, 817-3, 822-10, 830-1, 831, 833, 837-3
		제3반	799-2, 803-2, 817-2, 818-1, 819-1, 840-3
		제4반	975-1, 985-6, 989-4, 1005-2
	대천1리 (대천리)	제1반	492～497, 501-1, 502
		제2반	488-2, 488-3, 490～491-6, 492
		제3반	480-2, 481-1, 486-1～486-4
		제4반	430-1, 480, 480-1, 489-5～489-10
		제5반	131, 131-2～131-6, 134, 426-3, 429
	대천2리 (대천리)	제1반	330, 548, 549, 550～553, 545-2
		제2반	131-1, 553-1, 534, 540, 541-1, 543, 543-1
	응천리 (대천리)	제1반	239, 356～358-7, 371, 372, 357, 378, 572
		제2반	27, 115, 352～352-5, 356, 376～379, 401, 403
		제3반	156, 253, 352, 358, 360, 371, 376, 404-2, 404-3, 404-4
		제4반	373-1, 373-9, 141(근로자복지아파트1동 1-6호)
		제5반	373-1, 373-7, 373-9, 141(근로자복지아파트1동7-12호)
		제6반	373-7, 373-9, 141(근로자복지아파트2동,3동)

읍면	행정리 (법정리)	반 명	관 할 구 역(번 지)
옥천읍	마암리 (마암리)	제1반	84-2～86
		제2반	87, 94～94-6, 99, 110
		제3반	112, 113, 120, 122, 123, 128
		제4반	84, 87-2, 96-2,～96-9, 98-2
		제5반	92-3, 94, 95, 110
		제6반	92-5, 99, 102, 102-1
		제7반	95-4, 96-6, 97, 97-1, 97-2, 98-2, 99-3, 110～190
		제8반	97-4, 101-1, 102, 104
	마항리 (마암리)	제1반	182-4, 333, 339～339-4, 341～343, 379, 386, 433, 434
		제2반	182, 183, 186～189, 341～341-6, 433～433-5
	성암1리 (마암리)	제1반	14-2, 14-10, 14-11～14-19
		제2반	8-3～8-12
		제3반	21, 24, 19-24, 19, 18, 19-9
		제4반	19-7, 19-10, 19-26, 23-4, 23-5, 23-7
		제5반	23-8, 23-9
		제6반	10-2(한신연립주택)
		제7반	20(현대연립주택)
		제8반	20(현대연립주택)
		제9반	22-4(은혜연립주택)
		제10반	21-5(성옥연립주택)
		제11반	21-1(대청연립주택)
	성암2리 (마암리)	제1반	24-1, 29-9, 39-10, 29-12, 39-3
		제2반	26-14, 39-18, 42-4, 45, 42-10
		제3반	44-10, 44-11, 44-15, 44-17, 44-20
		제4반	55-2, 55-7, 55-16, 55-18
		제5반	29-16, 29-5, 29-7, 29-8, 59-2, 59-4, 28-5, 28-3, 28-10
		제6반	29-20(경동 가동)
		제7반	29-18(경동 나동)

읍면	행정리 (법정리)	반 명	관 할 구 역(번 지)
옥천읍	성암2리 (마암리)	제8반	29-4(경동다동)
		제9반	29-20(필성연립), 49-1(필성연립), 49-5
		제10반	43-9, 43-10(동원빌라)
		제11반	28, 66, 67
		제12반	23-19~20(예담마을아파트)
	성암3리 (마암리)	제1반	16(현대아파트 101동 1~2 통로)
		제2반	16(현대아파트 101동 3~4 통로)
		제3반	16(현대아파트 101동 5~6 통로)
		제4반	16(현대아파트 101동 7~8 통로)
		제5반	16(현대아파트 101동 9~10 통로)
		제6반	16(현대아파트 102동 1~2 통로)
		제7반	16(현대아파트 102동 3~4 통로)
		제8반	16(현대아파트 102동 5~6 통로)
		제9반	16(현대아파트 102동 7~8 통로)
		제10반	16(현대아파트 102동 9~10 통로)
	성암4리 (마암리)	제1반	487(양우내안애아파트 101동 1~2통로)
		제2반	487(양우내안애아파트 101동 3~4통로)
		제3반	487(양우내안애아파트 102동 1~2통로)
		제4반	487(양우내안애아파트 102동 3~4통로)
		제5반	487(양우내안애아파트 103동 1~2통로)
		제6반	487(양우내안애아파트 104동 1~2통로)
		제7반	487(양우내안애아파트 104동 3~4통로)
	양수1리 (양수리)	제1반	167, 168, 208-212, 290~294-4, 300~304-5, 400
		제2반	150~156, 160~171-1, 190~200
		제3반	168, 169, 170, 482
		제4반	70, 160, 168, 171, 172~198
		제5반	141(수정아파트)
	양수2리 (양수리)	제1반	53, 53-1, 53-2, 57, 80~140, 112
		제2반	113-1, 112-1, 112
		제3반	103, 104-1~7, 410-4, 109, 412, 401-4
		제4반	104(고려아파트)
	양수3리 (양수리)	제1반	438(지엘리베라움아파트 101동 1~2통로)
		제2반	438(지엘리베라움아파트 101동 3~5통로)
		제3반	438(지엘리베라움아파트 101동 6~7통로)
		제4반	438(지엘리베라움아파트 102동 1~2통로)
		제5반	438(지엘리베라움아파트 102동 3~5통로)
		제6반	438(지엘리베라움아파트 103동 1~2통로)
		제7반	438(지엘리베라움아파트 103동 3~5통로)
		제8반	438(지엘리베라움아파트 104동 1~2통로)
		제9반	438(지엘리베라움아파트 104동 3~5통로)
		제10반	438(지엘리베라움아파트 105동 1~2통로)
		제11반	438(지엘리베라움아파트 105동 3~5통로)
		제12반	438(지엘리베라움아파트 105동 6~7통로)

읍면	행정리 (법정리)	반 명	관 할 구 역(번 지)
옥천읍	가화1리 (금구리)	제1반	250-298
		제2반	249, 197, 200～204
		제3반	138～183
		제4반	153, 162, 189, 198～199-5, 205, 206, 253～294, 259-1
		제5반	138, 139, 168, 169, 195, 196, 207～209, 254～258
		제6반	199, 208, 209, 129-7～129-20
		제7반	250, 251, 253, 258, 259, 264, 284
		제8반	213, 235, 235-10, 235-49, 235-10
	가화1리 (금구리)	제9반	235-34, 235-55, 235-57(비원빌라)
		제10반	235-43～235-50(가화빌라)
		제11반	243-15, 243-16(삼영주택 101～104동)
		제12반	243-15, 243-16(삼영주택 105～108동)
		제13반	243-4(꿈엔들아파트), 249-14～53
		제14반	산9-1～산9-11, 249-1, 249-4, 249-9
	가화2리 (금구리)	제1반	180～183, 203-3, 14-1
		제2반	179-4(세원연립주택 가동)
		제3반	179-4(세원연립주택 나동)
		제4반	179-4(세원연립주택 다동)
		제5반	177-2(서일연립주택 가동)
		제6반	177-2(서일연립주택 나동)
	가화3리 (금구리)	제1반	235-1, 235-25, 235-77(가화현대아파트 101동 1～5층)
		제2반	235-1, 235-25, 235-77(가화현대아파트 101동 6～10층)
		제3반	235-1, 235-25, 235-77(가화현대아파트 101동 11～15층)
		제4반	235-1, 235-25, 235-77(가화현대아파트 102동 1～2호 통로)
		제5반	235-1, 235-25, 235-77(가화현대아파트 102동 3～4호 통로)
		제6반	235-1, 235-25, 235-77(가화현대아파트 102동 5～6호 통로)
		제7반	235-1, 235-25, 235-77(가화현대아파트 103동 1～5층)
		제8반	235-1, 235-25, 235-77(가화현대아파트 103동 6-10층)
		제9반	235-1, 235-25, 235-77(가화현대아파트 103동 11～15층)
		제10반	235-1, 235-25, 235-77(가화현대아파트 104동 5～6호 통로)
		제11반	235-1, 235-25, 235-77(가화현대아파트 104동 7～8호 통로)
		제12반	235-1, 235-25, 235-77(가화현대아파트 104동 9～10호 통로)
		제13반	235-1,235-25,235-77(가화현대아파트 104동1～4호통로1～7층)
		제14반	235-1,235-25,235-77(가화현대아파트104동1～4호통로8～14층)
	가화4리 (금구리)	제1반	235-26(다산금빛아파트 101동 1～2호 통로)
		제2반	235-26(다산금빛아파트 101동 3～4호 통로)
		제3반	235-26(다산금빛아파트 101동 5～6호 통로)
		제4반	235-26(다산금빛아파트 101동 7～8호 통로)
		제5반	235-26(다산금빛아파트 101동 9～10호 통로)
		제6반	235-26(다산금빛아파트 101동 11～12호 통로)
		제7편	235-26(다산금빛아파트 102동 1～2호 통로)
		제8반	235-26(다산금빛아파트 102동 3～4호 통로)
		제9반	235-26(다산금빛아파트 102동 5～6호 통로)

읍면	행정리 (법정리)	반 명	관 할 구 역(번 지)
옥천읍	가화5리 (금구리)	제1반	302(계룡리슈빌아파트 101동 1~9층)
		제2반	302(계룡리슈빌아파트 101동 10~19층)
		제3반	302(계룡리슈빌아파트 102동 1~2호 통로)
		제4반	302(계룡리슈빌아파트 102동 3~4호 통로)
		제5반	302(계룡리슈빌아파트 102동 5~6호 통로)
		제6반	302(계룡리슈빌아파트 103동 1~2호 통로)
		제7반	302(계룡리슈빌아파트 103동 3~4호 통로)
		제8반	302(계룡리슈빌아파트 104동 1~10층)
		제9반	302(계룡리슈빌아파트 104동 11~20층)
	금구1리 (금구리)	제1반	32-1, 32-13, 32-19, 32-21, 32-31, 49
		제2반	23-4, 23-27, 26-38, 31-8
		제3반	18-18, 19-20, 19-17, 23-35, 23-50
		제4반	21-5, 22-1, 23-1, 33-9, 33-17
		제5반	5-17, 5-40, 6-2, 6-12, 7-2
		제6편	7-7, 8-3, 8-11, 172-14, 172-62,
		제7반	171-12, 171-34, 176-11, 222-12, 263-9, 263-170
		제8반	5-7, 5-74, 5-84, 172-24, 222-313
		제9반	5-1, 5-19, 5-38, 5-55
		제10반	5-7
	금구2리 (금구리)	제1반	64-27, 171, 172, 172-4~35, 170-2~15
		제2반	11-3, 9-8, 10-2~4, 11-2, 161, 162, 174-5, 179-9
		제3반	12-1~16, 13-6, 13-12, 270-15
		제4반	160-4, 162-3, 162-28, 163-12~17, 283
		제5반	56-11, 57-10, 149, 154-158, 158-24
		제6반	145-2, 146, 157-2, 162-12~42, 164-13, 164-25
		제7반	145-5, 148-3, 157-5, 164-64,
		제8반	12-4, 149-3, 158-4, 158-21
	금구3리 (금구리)	제1반	142-1~143-10, 198~198-25
		제2반	138-1, 138-10~14, 144-7~11, 143
		제3반	112-4~30
		제4반	112-31~41
		제5반	126-8, 263, 284-1, 130-3, 131-5
		제6반	109-6~11, 113-1~112-33, 112-42, 114-13
		제7반	107-7, 108-1, 108-16, 263-30
		제8반	112-28, 136-3, 136-6, 137, 138-6~9, 139-6
		제9반	126-3~6, 126-13, 126-15

읍면	행정리 (법정리)	반 명	관 할 구 역(번 지)
옥천읍	금구4리 (금구리)	제1반	37, 37-1～14, 38-25(푸른연립)
		제2반	89-10, 89-26, 365-11, 365-19
		제3반	34-19, 35-2, 36-9, 37-4, 38-10, 38-24
		제4반	1-1, 2-1, 2-3, 4-1, 4-7
		제5반	34-22, 34-51, 38-2, 39-1, 475-14
		제6반	85-18, 95-9, 97-6, 271-1, 276-9
		제7반	91-10, 91-12, 93-6, 94-2(강남연립주택)
	신기1리 (금구리)	제1반	28-39, 31-1, 50 50-1～14, 64
		제2반	51～54
		제3반	66～67
		제4반	69～71, 42-5, 87, 97
		제5반	61-5～64-11
		제6반	64-15, 68
		제7반	70～73
		제8반	80～84, 72～75, 104
		제9반	64-24, 64-28(양지연립주택)
		제10반	81-2(삼우주택)
		제11반	99-8(문화빌라), 77-1(대성연립), 77(대성주택)
	신기2리 (금구리)	제1반	24-4～8, 30-1～14
		제2반	53～58
		제3반	54～56
		제4반	58～58-22
		제5반	54-2, 59
		제6반	61～63
		제7반	59, 60, 72
		제8반	28-1～13, 29-3～10
	장야1리 (장야리)	제1반	250, 253-14, 224, 224-1, 224-14, 242의8-9, 240-1
		제2반	253-1～26-4
		제3반	266-3, 266-6, 275, 276, 276-2, 273-2, 271-5, 278-2
		제4반	290～310-5
		제5반	180～190
	장야2리 (장야리)	제1반	262-2(그린아파트 1-6층)
		제2반	262-2(그린아파트 7-14층)
		제3반	262(성진아파트 1,2,3,호 통로)
		제4반	262(성진아파트 5,6,7호 통로)

읍면	행정리 (법정리)	반 명	관 할 구 역(번 지)
옥천읍	장야3리 (장야리)	제1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101동 1~3호 통로)
		제2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101동 4~6호 통로)
		제3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102동 1~2호 통로)
		제4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102동 3~4호 통로)
		제5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102동 5~6호 통로)
		제6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103동 1~2호 통로)
		제7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103동 3~4호 통로)
		제8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104동 1~2호 통로)
		제9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104동 3~4호 통로)
		제10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105동 1~2호 통로)
		제11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105동 3~4호 통로)
		제12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106동 1~3호 통로)
		제13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106동 4~6호 통로)
	장야4리 (장야리)	제1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201동 1~3호 통로)
		제2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201동 4~6호 통로)
		제3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202동 1~2호 통로)
		제4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202동 3~4호 통로)
		제5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203동 1~2호 통로)
		제6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203동 3~4호 통로)
		제7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204동 1~3호 통로)
		제8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204동 4~6호 통로)
		제9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204동 7~9호 통로)
		제10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205동 1~3호 통로)
		제11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205동 4~6호 통로)
		제12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205동 7~9호 통로)
		제13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206동 1~3호 통로)
		제14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206동 4~6호 통로)
		제15반	313(장야주공임대아파트 206동 7~9호 통로)
	장야5리 (장야리)	제1반	203-2(옥천그린빌아파트 101동)
		제2반	203-2(옥천그린빌아파트 102동)
		제3반	203-2(옥천그린빌아파트 103동)
		제4반	203-9~10, 203-22, 203-30
	장야6리 (장야리)	제1반	444(더퍼스트이안아파트 101동 1~2호 통로)
		제2반	444(더퍼스트이안아파트 101동 3~4호 통로)
		제3반	444(더퍼스트이안아파트 101동 5~6호 통로)
		제4반	444(더퍼스트이안아파트 102동 1~2호 통로)
		제5반	444(더퍼스트이안아파트 102동 3~4호 통로)
		제6반	444(더퍼스트이안아파트 103동 1호 통로)
		제7반	444(더퍼스트이안아파트 103동 2~3호 통로)
		제8반	444(더퍼스트이안아파트 104동 1~2호 통로)
		제9반	444(더퍼스트이안아파트 104동 3~4호 통로)
		제10반	444(더퍼스트이안아파트 104동 5~6호 통로)

읍면	행정리 (법정리)	반 명	관 할 구 역(번 지)
옥천읍	상야리 (장야리)	제1반	138, 149～151, 136-2, 137-1, 135-1, 135-2
		제2반	132-1, 134, 183, 133-7, 133-8, 133-4, 133-12
	삼양1리 (삼양리)	제1반	222, 222～346
		제2반	222～196, 223
		제3반	222, 222-112, 161-66
		제4반	161-8～20, 222, 223
		제5반	161-37～68, 166
		제6반	161-5～85
		제7반	153-4, 161, 183, 169, 174
	삼양2리 (삼양리)	제1반	203, 203-4～5, 205-3～8, 209, 210(다익빌라), 212, 214, 225
		제2반	225-1,3(운암아파트)
		제3반	60, 63, 196, 197, 195-1～2
		제4반	192, 193, 194, 195-3, 200, 203-2, 204, 205-1, 206, 208
		제5반	215-3,6～7(남부연립주택)
		제6반	187, 188, 189, 191, 217, 218, 220-1
		제7반	163, 183, 185, 186, 221, 220-15～25, 222-3～8
		제8반	215, 219, 220-8～14, 222-232, 222-301, 223, 225, 226, 227
	삼양3리 (삼양리)	제1반	23, 25, 41, 42, 44, 46
		제2반	5, 12, 26, 30, 37, 38, 39, 47
		제3반	40-1,4 0-4～8, 47-8(한양주택)
	서정리 (서정리)	제1반	11, 15, 145
		제2반	3, 114, 103, 77-1, 147-1, 209～216-1, 209-4
		제3반	243～269-10, 210, 272
	옥각리 (옥각리)	제1반	11, 26, 135-1～138, 155, 161～163, 351～373-2, 413～421-2
		제2반	132, 134, 135-6, 138～139-4, 155-5～163-2, 276, 357-3～364
		제3반	36～36-2, 135-6～139-1, 141-1, 153-2, 156-5, 163, 163-1, 357, 364-2, 367-1, 415, 418
		제4반	79, 131, 135-4, 137-2, 173-3, 140-1～141-1, 143, 155, 356～367-2, 415, 422
	각신리 (옥각리)	제1반	36-2, 54-1, 206, 224～286-2, 339, 405-1
	64개리	400개반	

읍면	행정리 (법정리)	반 명	관 할 구 역(번 지)
동이면	상촌리 (평산리)	제1반	612～619, 623～626, 725～730, 749, 751～755, 760
		제2반	723, 737～748, 756～759, 762～769
	평촌리 (평산리)	제1반	748-1, 785, 788～790, 792,810～813, 1235, 1335, 1350, 1354
		제2반	792～796, 801, 807～808, 815, 860
		제3반	816～821, 825～827, 832～835, 838～839, 842～844, 848～849, 851～853
		제4반	829～831, 835～836, 838～839, 842～844, 850～865, 885～889
		제5반	892～897-5, 867-3, 880, 917-1
		제6반	925, 930-5, 926-1, 932-3, 937～976, 1000～1003, 33, 1007-1
	소도리 (평산리)	제1반	128～129, 661～664, 660-4, 681～685-2, 748, 807-2, 860～863
		제2반	660～665, 669, 680, 685, 812, 818, 859～860
		제3반	127, 660-1, 664-3～6, 654, 666, 658-2, 664, 682, 680, 685-3, 760, 860-1, 860-3
	용운리 (세산리)	제1반	17, 1004～1008, 1014～1019
		제2반	997～1008, 1024～1029, 1037, 1096～1097, 1105～1108, 1227
		제3반	675～676, 671～672, 677, 1416～1418
		제4반	653, 658～659, 647
		제5반	667～668, 718～723, 725～726, 1043～1044, 1047～1049
		제6반	590～594, 597～599
		제7반	493, 575, 582～584, 593, 611～621
		제8반	53, 528～534, 546～547, 561～562, 699, 1357
	석화리 (세산리)	제1반	320～322, 349, 351～353, 355～357, 359
		제2반	302, 305, 307, 309, 357～359, 368, 361～363
		제3반	323～324, 334, 336～340, 345～346, 412
		제4반	208～210, 218, 220, 223～224, 238
		제5반	182, 212～217, 224, 228, 861-1
	학령1리 (적하리)	제1반	1230, 1233～1235, 1237～1238, 1242～1243
		제2반	1215～1221, 1226～1228
		제3반	663, 666～667, 681～682, 694～697
	학령2리 (적하리)	제1반	620-2, 647～657, 719, 721-1
		제2반	647-1～647-3, 667, 717-1

읍면	행정리 (법정리)	반 명	관 할 구 역(번 지)
동이면	학령2리 (적하리)	제3반	799-2, 800-3, 802, 805~806, 808
		제4반	518, 814, 817, 820~822
	용죽리 (적하리)	제1반	516~517, 522~523
		제2반	210, 212~213, 523~526
		제3반	112, 375~377, 386~390, 468~469, 472, 475~479, 480~481
	금암1리 (금암리)	제1반	42~46, 51, 55~57, 59~60, 62
		제2반	489, 491~493
		제3반	526~531, 500~514, 515~522, 523~536, 537~558
	금암2리 (금암리)	제1반	324, 325, 434, 435, 1076-2
		제2반	412~413, 415, 426~427, 439-1~458-3, 76, 77
	금암3리 (금암리)	제1반	752~755, 590-1~8, 549, 589-2
		제2반	589~591, 593~596
		제3반	547, 549~552
		제4반	553~554, 569, 571, 573, 577, 579~586
		제5반	879-2~3, 882, 889-1, 893~897
		제6반	732~735, 740, 740-2~10
	조령1리 (조령리)	제1반	581, 587, 588~590, 592, 597~598
		제2반	586, 599~606, 609~610
	조령2리 (조령리)	제1반	44, 45, 61~63, 66, 86~91, 94-3
		제2반	101~106, 109, 110, 116, 197, 220, 223, 224, 226
	마티리 (청마리)	제1반	801~806, 811~816, 819~827, 835, 851-1, 859, 989, 925-1
		제2반	82~88, 572
	가덕리 (청마리)	제1반	261~263, 266, 268, 269, 270~273
		제2반	173~175, 178, 181, 182, 275~277, 281
	우산1리 (우산리)	제1반	663~666, 646-3, 646-1, 649~657
		제2반	685, 661-1~661-6, 281~282
		제3반	290, 292, 270~271, 275~279, 319-1, 309-2, 266-2
		제4반	14, 29, 30, 46, 84~85, 174-1
	우산2리 (우산리)	제1반	877~884, 830~832, 873~874, 826, 869-4, 828-1

읍면	행정리 (법정리)	반 명	관 할 구 역(번 지)
동이면	우산2리 (우산리)	제2반	820～821, 882～891, 878, 885
		제3반	537～542, 524～527, 612, 613-1, 609, 577, 400-2
	현동리 (지양리)	제1반	604～608, 610, 619, 626, 627, 654, 757, 880, 943
		제2반	614, 617, 619, 588, 592
		제3반	590-1, 583～590
	지장리 (지양리)	제1반	470～483, 464, 465, 442～445, 447～448, 431～435, 434, 419, 436-1～2
		제2반	402～404, 406～408, 416～418, 420～530, 390, 394, 398, 399
	석탄1리 (석탄리)	제1반	606～608, 610, 642-2, 642-4, 644, 655-2, 645
		제2반	642, 642-1, 643, 648～651, 680, 682, 686-3
	석탄2리 (석탄리)	제1반	477-1～492
		제2반	433～470
	남곡리 (남곡리)	제1반	457～468, 470～471-1
		제2반	321～323, 318-1, 319, 316, 315-6, 310-3, 295～297
		제3반	367-1, 365, 364-1, 355, 352-1, 352-5, 351-3
		제4반	285, 285-1～17, 287～288
		제5반	221～263, 491～508
	22개리	74개반	

[별표 2]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제5조관련)

읍 면	법정리	정 원	관 할 구 역 (행 정 리)
총계		226	
옥천읍	죽향리	3	죽향1리, 죽향2리, 죽향3리
	문정리	6	문정1리, 문정2리, 문정3리, 문정4리, 문정5리, 문정6리
	상계리	1	상계리
	하계리	1	하계리
	교동리	1	교동리
	동안리	1	동안리
	수북리	2	화계리, 동정리
	오대리	1	오대리
	매화리	1	매화리
	구일리	3	귀화리, 귀죽리, 귀현리
	서대리	2	서대1리, 서대2리
	가풍리	2	가풍리, 원각리
	삼청리	4	상삼리, 하삼리, 중삼리, 소정리
	대천리	3	대천1리, 대천2리, 응천리
	마암리	6	마암리, 마항리, 성암1리, 성암2리, 성암3리, 성암4리
	양수리	3	양수1리, 양수2리, 양수3리
	금구리	11	가화1리, 가화2리, 가화3리, 가화4리, 가화5리, 금구1리, 금구2리, 금구3리, 금구4리, 신기1리, 신기2리
	장야리	7	장야1리, 장야2리, 장야3리, 장야4리, 장야5리, 장야6리, 상야리
	삼양리	3	삼양1리, 삼양2리, 삼양3리
	서정리	1	서정리
	옥각리	2	옥각리, 각신리
옥천읍 소계	21	6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8호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발의의원 : 추복성, 유재목 의원

3. 제정이유

○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 · 여건 마련 등(안 제3조)

○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 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의 중복 지원 제한(안 제9조)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유관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6.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방안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방안

5. 농촌사회 정착 지원 방안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년농업인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지원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제한)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

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